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6. 29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
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예 순

- 상소동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-
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상소동 산림욕장과 연계한 공원조성으로 시민의 건강,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할 목적으로 체육공원을 결정하기 위하여
- 동구 상소동 1번지 일원을 2005. 08. 08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체육공원을 결정·조성하기 위해 수립한 대전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체육공원) 결정을 입안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함.

【관련법규】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(도시관리계획의 입안)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(지방의회 의견청취)

2. 주요내용

○ 도시관리계획(체육공원) 결정조서

▶ 결정조서

구 분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 설	상 소	체육공원	동구 상소동 1번지 일원		37,018	37,018	

▶ 결정 이유서

구 분	시설 명	변경내용	변경이유
신 설	체육공원	· 신설 (면적 : 37,018m ²)	·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체력단련의 장을 제공 하고 산림욕장과 연계된 공원조성으로 시민의 건강,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신설

3. 검토의견

○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와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,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,

○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일원은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체육공원으로 계획된 지역으로 이 일대 37,000m²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.

- 금번 계획의 목표연도는 2008년으로 동구 상소동 체육공원내 축구장, 농구장, 체력단련장 등 운동시설과 주차장,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계획하였으며,
- 사업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3,200백만원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와 시의 특별교부금, 공원조성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.
- 상소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동구 원도심 주변의 재개발 환경여건 변화에 부응하고, 상소동 산림욕장과 연계한 공원조성으로 시민의 여가활용과 체육활동을 통한 심신단련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본 사업의 목표연도가 2008년으로 불과 1년을 남긴 시점에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, 토지매입, 실시설계, 공원조성 등 사업추진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연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소유자의 이해설득 및 신속한 보상과 국비, 시비 등 원만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,
- 공사추진시 토사유출이나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 등 인근주민의 피해예방대책을 적극 강구하고,
- 공사완료후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시설 확충, 진출입 동선 확보 및 대중교통체계 확립 등 교통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